

1. 예산총칙

2015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80,197,584	11,405,928
일반회계	334,067,803	10,022,034
특별회계	46,129,781	1,383,893
기타특별회계	46,129,781	1,383,89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467,358	44,021
수질개선특별회계	14,448,641	433,45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12,126	18,364
농업소득기금특별회계	6,298,848	188,965
자활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601,183	18,035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7,259,329	217,780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66,000	1,98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059,611	31,788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4,710,550	141,317
소수력발전사업 특별회계	132,512	3,975
공무원아파트특별회계	9,473,623	284,209

제 2 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서"와 같다.

제 3 조 2015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9,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의 총액은 9,614,904천원이며, 재해·재난 예비비 6,614,904천원을 포함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